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물관할 변경〉

■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700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병 섭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물관할 변경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3. 6.
3. 회 부 일 : 2025. 3.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규정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등의 경우는 합의부 심판대상에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러나 인명 피해가 크고 법률·사실관계 관련 쟁점이 많은 중대재해 사건의 특성상 중요 사건을 담당하는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사건을 합의부 심판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물관할 변경

- 개정안은 현행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을 삭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¹⁾에 해당하는 사건을 합의부 관할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 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3. ----- ----- -----.
가. ~ 사. (생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	<삭제>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u>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u> <u>당하는 사건</u> 4. ~ 6. (생 략) ②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사물관할이란 사건의 경중 또는 성질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를 말하는 것으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에 속함.

제1심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제4항²⁾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하나,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제1호), ‘민사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제2호), ‘형사사건 중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특수상해·특수절도·존속 폭행,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등 현행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건을 제외한 사건’(제3호) 등은 합의부 관할임.

- 현행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합의부 관할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에서 정한 특수상해·특수절도나 「병역법」 위반사건,

2)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④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부정의료업자 처벌, 수표 위·변조, 음주 운전 재범 가중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등은 단독판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³⁾

<현행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단독판할 사건>

구분	규 정	내 용
가목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	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 특수절도, 특수절도의 상습범, 그 각 미수죄, 특수공갈과 그 미수죄, 장물죄의 상습범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	공동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공갈의 누범가중
다목	「병역법」 위반사건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등 대체역 편입서류 허위작성·제출 등 사회복무요원 등 대리복무
라목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절도등, 장물취득·알선 누범가중처벌

3) 「법원조직법」 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 가.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331조, 제332조(제331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와 그 각 미수죄, 제350조의2와 그 미수죄, 제363조에 해당하는 사건
 -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제3호, 제6조(제2조제3항제2호·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건
 - 다. 「병역법」 위반사건
 - 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5조의4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사건
 - 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건
 -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4.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5.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마목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부정의료업자 처벌
바목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 위·변조
사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아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	중대산업재해, 시민재해 사업주등

자료: 법원행정처 정리 자료 활용

- 현행법에 따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 처벌법」” 이라 함)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건 또는 중대산업재해를 원인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여 형이 가중되는 사건의 경우는 현행법 제32조 제1항 제3호아목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이고,

중대산업재해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건과 중대시민재해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2항4)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4)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므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임.⁵⁾

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 사건이나, 경우에 따라 중대한 사건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제32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결정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2024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사물관할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전체 사건 12건 중 합의사건이 7건, 단독사건이 5건으로 합의사건의 비중이 더 높았으나, 2023년은 전체 사건 45건 중 단독사건이 34건, 2024년은

-
- 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체 사건 63건 중 단독사건이 57건으로 단독사건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물관할 현황 >

(단위: 명)

연도별	합의부 관할 사건	단독판사 관할 사건
2022. 1. 27. ~ 2022. 12. 31.	7	5
2023	11	34
2024	6	57

○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인 경우가 많고, 단독판사가 심리할 경우 사건 간 형량의 편차가 커지며, 형량을 높게 선고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취지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⁶⁾.

○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을 삭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⁷⁾에 해당하는 사건을

6) “중대재해 재판에 단독재판부 심리 적절성 논란”, 매일노동뉴스, 2023. 2. 3. 기사, “중대재해사건, 단독 아닌 합의부 심리가 바람직”, 법률신문, 2024. 7. 13. 기사

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단독판사 관할에서 합의부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 제정, 2022. 1. 27. 시행)될 당시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제안으로 부칙⁸⁾으로 추가되었는데,

당시 심사과정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통상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⁹⁾ 사건이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과 유사한 점,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단순한 사건일 수도 있는 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규정하더라도 중대한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부가 심판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¹⁰⁾되었음.

○ 개정안과 같이 현행법 제32조제1항제3호아목을 삭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¹¹⁾에 해당하는 사건을

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9)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0) 제383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1. 1. 6.) 회의록 참조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

합의부 관할로 규정할지 여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과급력 및 단독판사가 심리할 경우 사건 간 형량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유사 사건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단독판사 관할이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심판할 수 있다는 점, 형사공판 사건 중 단독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이 합의부 관할 사건의 처리기간보다 단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형사공판사건(1심) 평균 처리기간 년별비교표 >

(단위 : 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의	5.3	5.9	6.6	6.8	6.9
단독	4.7	5.2	5.8	5.9	5.8

자료 :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에서 보다 신중하게 심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정 당시 유사한 유형의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사건을 모두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결정하였고,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 하더라도 심리상 더 단순한 사안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사물관할을 단독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합의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실제 심리가 진행된 사건 수도 많지 않으므로 향후 시행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71